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의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2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국가의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3

I. 개요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2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인프라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음.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이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며, 산모의 산후우울증 경험률 또한 68.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이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필수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Ⅱ. 검토 의견

1. 국가의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17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는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산후조리원의 공급실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지정·운영하여야 한다.</u> <u>1. 산후조리원이 없고, 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시·군</u> <u>2.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운영할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시·군</u> <u>3. 민간산후조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권</u>

<신 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권역별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지정·운영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가 규정되었음.
-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²⁾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규정되었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되었음.
- 2024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³⁾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60개소 중 4.6%에 해당함.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 9.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60	21	439	61.5	55.9	175	364	8.0	12.3

* 자료: 보건복지부('24.12월 기준, 휴업한 산후조리원 제외)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없지만 다른 시·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시·군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전국 어디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공급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음.

□ 다만, 현행법 제15조의17제1항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다는 정책적 전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설치·지정·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아니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⁶⁾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보조'라는 용어는 '보조금'과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 730.)

5)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입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예컨대 "지역 내 어려운 현안들, 자치단체 간 경계 넘어 함께 해결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10. 23.)에 따르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서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시와 영양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자체 간 투자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비인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⁷⁾을 통하여 시·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는 사례⁸⁾가 발견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7)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이 아니며 203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용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8545호, 2021.12.7.>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 강원 영월, 충북 제천, 충남 논산, 전북 정읍, 경북 안동 등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역 구분 없는 보편적 정책 지원 제공을 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로서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	○민간 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
대한의사협회	○단순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국가도 하도록 하거나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임신·출산·육아 모든 면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 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및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로 인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면적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27	31	1,298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2023.12.	12	12	1,187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28	28	2,88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13	13	1,498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5.	20	20	2,437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13	15	765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10	10	1,341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6.	8	8	825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5	5	603
강원 양양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5	7	7	1,638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8	9	580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10	10	494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0	10	616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0	10	730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6	18	797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	5	113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9.	8	10	707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12	14	1,432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3	10	1,998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6.	8	8	52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1	15	548

자료: 보건복지부